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9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폐의약품 관련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자원순환 과로 이관된 바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에서 폐의약품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에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련 내용을 삭제함
- 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중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시장”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채용 중인 사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u></p> <p>3. · 4. (생 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생 략)</p> <p>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u></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 --- <u>“시장”이</u>----- ----- -----.</p> <p>제4조(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5.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삭 제>

5. ~ 8.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

1.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
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
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
육

2.·3. (생략)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
리사업

5. ~ 9. (생략)

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

<삭 제>

<삭 제>

2.·3. (현행과 같음)

<삭 제>

4. ~ 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제2호, 제3조(시장의 책무)의 자구를 수정하고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각 호와 각 목의 구성을 변경·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